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3
----------	-----

2022. 4. 2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13. / 이창희 의원 등 5명
- 나. 회부일자 : 2022. 4.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4.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건축 등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24조의2)
-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1.4.13.)에 따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 등을 명확

히 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제2항 및 제101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비율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공정비사업 참여로 완화 받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축 비율을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심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